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세입.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 도 액
계		376,992,565	11,309,777
1. 일 반 회 계		366,542,402	10,996,272
2. 특 별 회 계		10,450,163	313,505
	의 료 보 호 기 금	721,440	21,643
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2,099,383	62,981
	주 차 장	6,146,794	184,404
	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	312,171	9,365
	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547,100	16,413
	지 하 수 관 리	623,275	18,698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155,018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